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441

발의연월일: 2025. 5. 9.

발 의 자:김승수·강대식·안철수

서지영 • 박성민 • 조승환

권성동 • 배준영 • 엄태영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장등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통행량, 사고위험성,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통행속도 제한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제2항 단서 신

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어린이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해제 및 관리) 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			
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			
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u>다만, 어린이 통행량과 사</u>		
	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		
	<u>한할 수 있다.</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생 략)	속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장이나 시·도경찰청	②		

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수 있다. <단서 신설>

<u>다만, 보행자 통행량과 사</u>
그이커가 ㄷㅇ 그리라서 피스커
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과 노
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달리 제
<u>한할 수 있다.</u>
4 0 (51-9 1 1 4)

- 1. 2. (생략)
- ③ (생 략)

- 1. 2.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